

등록번호	기획홍보실-3848
등록일자	2019. 03. 11.
결재일자	2019. 03. 11.
공개여부	대국민 공개

주무관	예산주무관	기획홍보실장	부구청장	구청장
				2019. 3. 11.
협 조				

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

울산광역시 복구
[기획홍보실]

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
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재정의 민주성·책임성·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
-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

II 추진방향

- 주민 제안접수 확대로 주민참여의 범위 및 기회를 늘려서,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제안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
- 주민참여예산제도 선도 자치단체로서 제도의 부분적 개선·보완을 통한 선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도모

III 2018년 성과 및 개선과제

□ 주요성과

- 동 소규모지역사업(동단위 자치계획형) 선정시 동별 상한액 폐지
 - 동별 경쟁으로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사업결정에 유연성 확보 및 양질의 사업 발굴
- 「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」 선정
 -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및 인센티브 예산 확보

□ 개선과제

○ 제한된 참여범위

- 예산편성 과정에만 주민참여절차가 보장되어 있어 예산편성 이후 사업 집행 과정 등에 주민참여가 미흡

○ 참여를 위한 방법의 다양성 부재

-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해서만 의견 제안이 제한되어 운영됨
- 시민위원회가 단순 사업제안 및 의견 제시로 역할이 한정됨

IV 2019년 주요 개선사항

○ 참여 범위의 확대(예산편성 → 예산 전과정)

-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여
- 예산편성 외 사업 집행 과정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으로 사업추진 점검

○ 시민위원회 사업예산 한도액 부여(2억원)

- 분과별 제안된 사업에 대해 시민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를 통해 결정(1~2개 사업)

○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(온라인 접수)

- 접수기간 : 5월 ~ 7월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, 기획홍보실, 동 행정복지센터(네이버 폼 설문조사 병행)

※ 홈페이지 배너, 복구 SNS를 통한 홍보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 포상

- 활동 실적 우수위원 등 주민참여예산 발전 유공자 표창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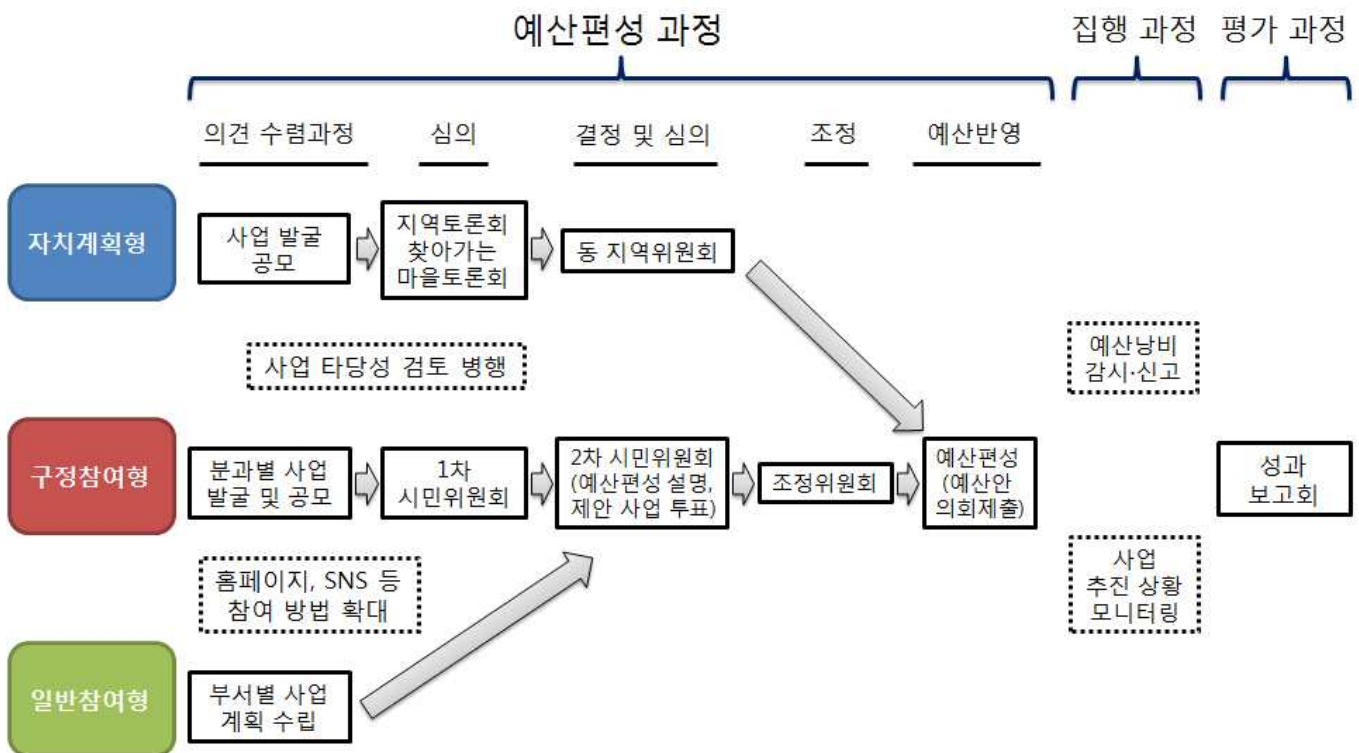
V 2019년 추진개요

□ 운영개요

- 대상회계 : 일반회계
- 심의대상 : 14개 통계목 【붙임1】
- 사업범위

구 분	공모사업		일반참여형
	자치계획형	구정참여형	
주 관	동 지역위원회	시민위원회	
내 용	동 소규모 지역사업 제안 및 선정	구 전체 범위 분과별 사업 제안 및 선정	심의대상 통계목(붙임1)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예산규모	5억원 한도 내	2억원 한도 내	부서별 사업 계획에 따름

□ 운영체계



□ 추진계획

구 분	추진사항	주요내용	일정
준비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· 위원회 재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운영계획 자문 · 위원회 재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기만료에 따른 <u>연구회</u>, <u>시민위원회</u>, <u>동 지역위원회</u> 재구성 	2019. 2월
예산편성 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참여예산 교육 · 주민의견 수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예산 학교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위원, 지역위원 대상자 ·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문화가족, 청소년 등 ·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지역 우수사례 공유 · 주민의견 수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 	2019. 4월~7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 지역위원회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별 지역위원회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개최 - 동 소규모 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 	2019. 6월~8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민위원회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제1차 시민위원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9년도 추진상황 설명 및 사업제안, 제안사업 검토 · 제2차 시민위원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별 예산심의 - 시민위원회 제안사업 선정 	2019. 7~10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정회의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조정회의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조정 	2019. 11월
예산집행 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예산 모니터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예산 모니터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기별 추진상황 공개, 의견수렴 · 예산낭비 감시 활동 	연중
예산평가 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과보고회 개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19년도 성과보고회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진성과 보고, 공로자 표창 등 	2020. 1월

VI 세부추진계획

1 주민참여예산 운영 준비과정

□ 참여예산 연구회 개최

- 일 시 : 2. 27.(수) 11:00
- 참석대상 :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9명
- 내 용
 -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
 -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및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운영계획 자문
 - 신규 추진과제 및 기타 제도 관련 토의 및 자문

□ 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

- 시 기 : 4월중
- 임 기 : 2년(2019. 5. 18. ~ 2021. 5. 17.)
- 구성인원 : 9명 이내(예산관련 전문가, 시민단체 관계자, 관련분야 종사자 등)
- 역 할 :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운영방안 지원·자문

□ 시민위원회 재구성

- 시 기 : 3월중
- 임 기 : 2년(2019. 7. 1. ~ 2021. 6. 30.)
- 구성인원 : 80명 이내(시민·사회단체·기관 추천, 공고모집 등)
- 역 할 :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·반영하는 활동 등

□ 동 지역위원회 재구성

- 시 기 : 3월중(동별 자체 모집, 위촉자 : 동장)
- 임 기 : 2년 (2019. 7월 ~ 2021. 6월, 연임가능)
- 구성인원 : 15명 ~ 25명 이내(희망 주민, 주민자치위원 등)
- 역 할 : 주민의견 수렴, 동 소규모지역사업 발굴·선정 등

□ 참여예산 학교 운영

※ 별도 시행계획 수립

- 기 간 : 3월 ~ 6월
- 대 상 : 다문화·청소년, 시민·지역위원 신청자, 일반 주민
- 내 용
 - 시민, 지역위원 신청자 대상 교육
 - 시민위원·지역위원 신규교육 및 공동교육(강의식 및 토론·발표)
 -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장 방문
 - 다문화·청소년 등 찾아가는 예산학교
- 방 법 :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(15,000천원)

□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

※ 별도 시행계획 수립

- 기 간 : 7월 중 4일
- 대 상 : 시민위원, 지역위원 위촉자
- 내 용 : 현장교육 및 시설견학, 관련분야 특강 등
- 방 법 :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(15,000천원)

□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접수

- 기 간 : 5월 ~ 7월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, 기획홍보실,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
- 내 용 : 2020년도 당초예산 반영 사업 제안 접수

※ 주민제안 부적합 사업 【붙임2】

□ 동 지역위원회 운영 ※동별 자체계획 수립

- 기 간 : 연중 (※ 동 소규모 지역사업 선정 : 6월 ~ 8월)
- 대 상 : 동 지역위원
- 내 용
 - 사업 발굴 및 현장 방문
 -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등 주민의견 수렴
 - 사업심의 및 동별 소규모사업 우선순위 선정
(8개동 전체 5억원 이내)

□ 제1차 시민위원회 개최

- 시 기 : 7월 중 1일
- 대 상 :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
- 내 용
 -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경과 설명
 -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사업 제안

□ 제2차 시민위원회 개최

- 시 기 : 10월 중 3일간
- 대 상 :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
- 내 용
 - 1일차 : 2020년도 예산요구안 (주민제안, 부서자체사업) 설명 및 토론
 - 2일차 : 예산요구안에 대한 검토 및 분과별 사업현장 방문
 - 3일차
 - 분과별 제안사업 중 우선순위 선정(2억원 한도내)
 - 2020년도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

□ 조정회의 개최

- 시 기 : 11월 초
- 대 상 : 조정회의 위원 10명
 - 위원장(구청장), 위원(부구청장, 국장 3, 시민위원장 1, 분과위원장 4)
- 내 용 :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의 시민위원회 심의결과를 총괄 조정

3 주민참여예산 집행과정

□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

- 대 상 :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
- 방 법 : 사업제안자,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업진행과정 모니터링 반영
- 내 용
 - 일반제안사업 : 시민위원회 분과별 위원과 사업제안자 참여
 - 동 소규모사업 : 동 지역위원회 위원 참여

□ 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공개

- 대 상 :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제안사업
- 시 기 : 분기별 1회(1월, 4월, 7월, 10월)
- 방 법 : 홈페이지 분기별 추진실적 공개를 통한 제안사업 피드백 제공

□ 예산낭비 감시 활동

- 기 간 : 연중
- 대 상 : 예산사업
- 내 용
 - 참여예산 학교 운영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홍보
 - 예산낭비신고, 예산절감 제안 등

4

주민참여예산 평가과정

□ 성과보고회 개최

- 시 기 : 2020. 1월 중
- 대 상 : 연구회원, 시민위원, 동 지역위원
- 내 용
 -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보고
 - 참여예산 개선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 및 토론
 - 주민참여예산 공로자 표창

VII 홍보계획

□ 구 홈페이지 “주민참여예산” 코너 운영

- 연간 운영계획, 추진상황 및 운영실적 공개 등
- 주민의견수렴 사업제안 항목 추가 : 4월중

□ 주민참여예산 홍보 강화

- (홍보물) 포스터, 리플릿, 현수막 등 제작·배포
- (인터넷) 북구 홈페이지, 공식 블로그 등 활용
- (전광판) 홍보 전광판에 홍보 문구 송출
- (언론) 보도자료 배포, 구정소식지 게시

VIII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주 요 내 용	예 산 액	비고
계		58,498	
일반운영비	회의자료 제작, 위원회 운영수당	8,830	
일반보상금	위원회 간식비, 참석 위원 실비	19,668	
민간인 위탁교육비	예산학교 운영, 선진지 견학	30,000	

IX 행정사항

□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예산반영 : 전 부서

-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 제출 : 6월
-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제출 : 8월한
- 예산안 반영 : 9월(당초예산 요구기간내)
- 2020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제안 설명 : 10월(제2차 시민위원회)

□ 동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: 전 동(洞)

- 동별 지역위원회 모집 : 3월중
- 지역위원 예산학교 참여 : 4월 ~ 7월
-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발굴 제출 : 7월한
- 동 소규모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출 : 8월한
-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제출 : 12월
- 동 소규모 제안사업 지역위원 모니터링 결과 제출 : 연중

【붙임 1】

주민참여예산 심의대상 · 제외 통계목

① 심의대상

통 계 목		비 고
206(재료비)	206-01	재료비
207(연구개발비)	207-01	연구용역비
	207-02	전산개발비
	207-03	시험연구비
307(민간이전)	307-01	의료 및 구료비
	307-05	민간위탁금
	307-08	이차보전금
	307-12	민간인위탁교육비
308(자체단체등 이전)	308-11	기타부담금
401(시설비 및 부대비)	401-01	시설비
	401-02	감리비
	401-04	행사관련시설비
402(민간자본이전)	402-03	민간위탁사업비
405(자산취득비)	405-01	자산 및 물품취득비

② 심의제외 대상

- 자산취득비, 재료비 총액 3,000천원 미만 소액사업
- 계속사업 및 민간위탁금 제외
- 제외대상 통계목

편 성 목 / 통 계 목	제외사유
• 인건비(100)	• 인건비
•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직무수행경비, 의회비 (201/202/203/204/205) • 보험금(307-06), 연금지급금(307-07),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(308-10) • 경상전출금(309), 도서구입비(405-02)	• 경상적 경비
• 일반보상금, 이주 및 재해보상금, 포상금, 연금부담금, 배상금, 출연금 등 (301/302/303/304/305/306) • 교부금 및 조정비(308-02/03/04/05/06), 자치단체간 부담금(308-07) • 차입금이자상환(311),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(403-02)	• 법정경비 및 우선지급경비
• 국외이전(310), 공사공단지본전출금(404), 기타자본이전(406), 국외자본이전(407) • 융자금(501), 출자금(502)	• 예산편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외
• 시설부대비(401-03)	• 사업부대비
• 보전재원(600), 내부거래(700), 예비비 및 기타(800)	• 법정전출금, 예비비 등
• 민간경상사업보조(307-02), 민간담체 법정운영비보조(307-03), 민간행사사업보조(307-04), 운수업계 보조금(307-09),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(307-10), 사회복지사업보조(307-11), 자치단체 경상보조(308-01),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(308-08),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(308-09),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/02), 자치단체자본보조(403-01),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(403-03)	•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

【붙임 2】

주민참여예산 제안 부적합 사업(예시)

- 복구 관할 외 사업(타 지자체, 교육청, 경찰서 등 타 기관 관할)
-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사업(위법성 판단)
-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 이익을 위한 사업(비공공, 수혜 범위 협소)
- 자체 사업이 아닌 국시비 매칭사업
- 직접 수행사업이 아닌 보조사업 성격의 사업
- 기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등
- 단순 일회성 공연, 축제, 행사 사업,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, 사업목적을 벗어난 자산, 물품 구입 등

